

서울시 대부업체의 현주소와 관리감독 개선방안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50

2013.9.16

서울시 대부업체의 현주소와 관리감독 개선방안

	요약	3
I.	서울시 대부업체의 현주소	4
II.	현행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문제점	10
III.	서울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개선방안	14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31
younh@si.re.kr

대부업은 최저자본금, 자격제, 영업장 기준에 대한 등록조건이 없는데다 외견상 39%의 높은 금리로 금전대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법인, 개인들이 앞다투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만 4,400개가 넘는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들이 법규 위반, 빈번한 폐업, 민생 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형 대부업체는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와 개인 대부업체는 영세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금액은 전체 대부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와 개인 대부업체의 대부금액은 미미하다. 대형 대부업체가 최고금리를 부과하고 과도한 이익을 얻는 반면, 시민부담은 크다.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의 경우 높은 연체율로 많은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개인 대부업체의 41%는 대부실적이 없고, 대부금액과 거래자 수가 적어 영세하다.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장소가 주택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결여되어 법규 위반의 소지가 높아 시민피해가 예상된다.

대부업체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부실업체 진입 및 관리감독시스템 미비

대부업은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고 영업장 제한도 없기 때문에 연간 2,500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하고 비슷한 수의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난립되어 있다. 많은 업체가 산재한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등록, 관리감독, 행정처분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고, 시·도는 다시 기초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은 기초단체에 맡기는 기형적인 감독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 인원이 부족하여 대부업체를 충분히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 대부업체의 재정비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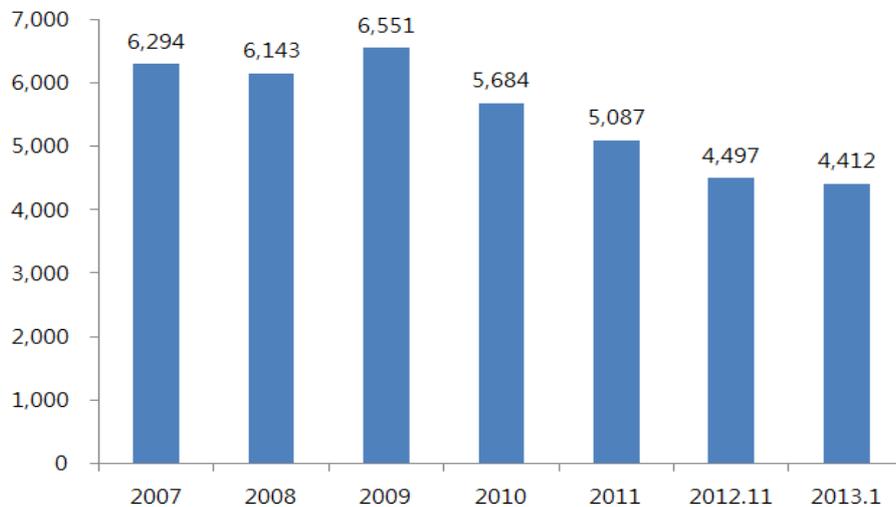
첫째, 영세업체를 재정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등록비 인상, 보증금, 자격증 제도 등 대부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이 서민금융으로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로 적절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영업행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직접 시행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전문검사역의 증원, 대부업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I. 서울시 대부업체의 현주소

서울시 대부업체의 현황

대형 대부업체가 자산 및 고객 수 측면에서 시장을 지배

- 2013년 1월 기준 서울시에 총 4,412개의 대부업체가 등록
- 2009년 이후 계속된 이자율 인하,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 미실적 업체의 폐업 유도로 인해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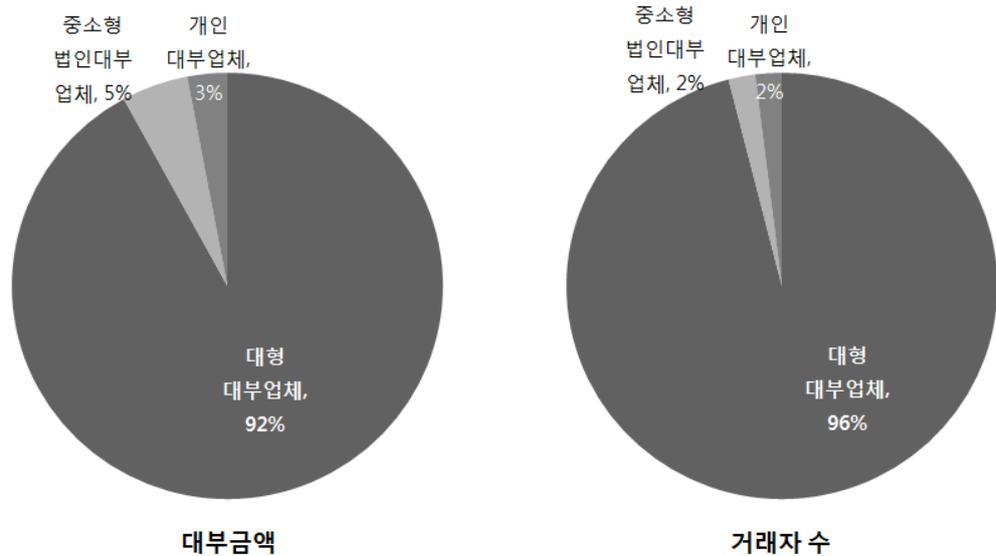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시(2013)

그림 1. 서울시 대부업체 수

- 재무분석이 가능한 1,898개 대부업체의 대부자산 총액은 약 7조 2,000억원
- 대부업체는 대형 대부업체,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 개인 대부업체로 분류가 가능
- 대형 대부업체는 41개이며, 이들의 대부금액이 전체 대부금액의 92%를 차지
-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는 211개이며, 이들의 대부금액 비중은 전체의 5.1%
- 개인 대부업체 1,646개의 대부금액 비중은 2.9%로 매우 낮은 수준
-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는 약 230만명으로 다수가 이용

-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거래자는 220만명으로 거래자의 95.6%를 차지
-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의 거래자는 47,869명으로 약 2%
- 개인 대부업체의 거래자는 43,264명으로 2% 내외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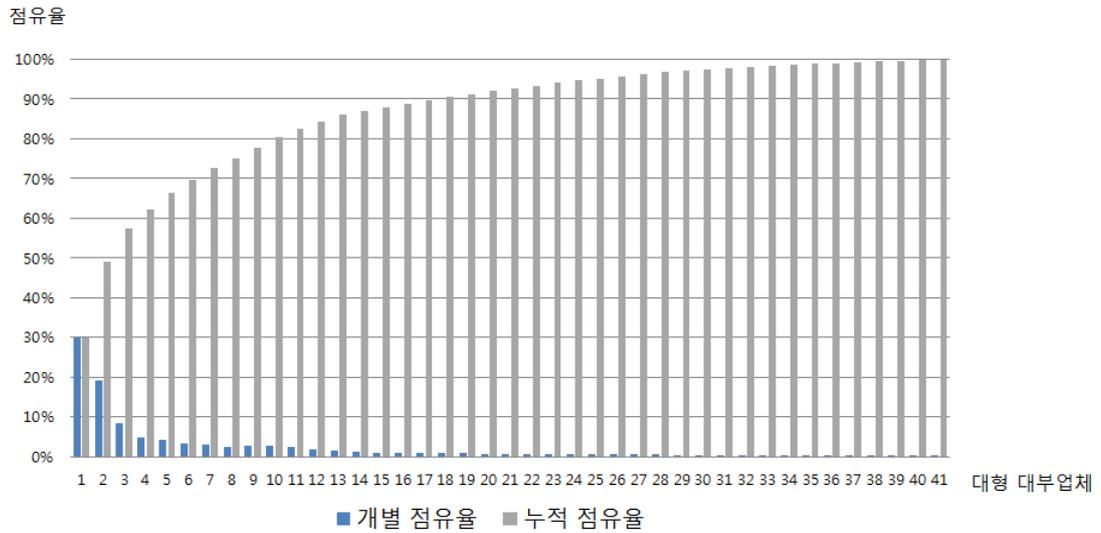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2. 서울시 대부업체 규모별 대부금액 및 거래자 수 비중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는 대형 대부업체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강력한 과점지배

- 대형 대부업체 41개 가운데 상위 4개사의 강력한 시장지배력
 - A&P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9.9%, 19.1%, 8.4%, 4.7%로, 이들의 누적점유율은 62.1%로 강력한 과점현상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3. 대형 대부업체의 점유율 및 누적 점유율

과도한 영업마진과 높은 영업비용

○ 과도한 영업마진과 이익률

- 차입이자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금리마진은 평균 28%로 매우 높은 수준
- 자본금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387%로 이익률 역시 매우 높은 수준

○ 고위험 대부영업과 높은 대출상각비용

- 평균연체율은 14.4%로 매우 높고, 평균 대출상각비용은 151억원으로 영업비용의 31.6% 차지
- 대출상각비용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기형구조

○ 중개업체에 과도하게 의존

- 중개업체를 통한 신규대출이 고객유치 경로의 약 76% 수준
- 과도한 중개 의존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는 평균 54억원으로 평균인건비 47억원보다 높은 수준

영세한 중소기업 법인 대부업체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의 취약한 영업구조

- 대부금액 기준으로 영세업체가 다수
 - 중소기업 법인 대부업체 449개 가운데 대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190개로 전체의 42%이고,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259개로 과반
- 열악한 수익 및 비용 구조
 - 대부금액이 10억원인 업체의 수익과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적자가 불가피
 - 수익에 대해 최고금리인 39%를 적용하고, 비용에 대해 차입이자율 10%, 연체율 14%, 중개수수료 8%를 적용하며, 이에 더하여 인건비 및 임대료, 전산비용 등 사무실운영비 10%를 감안하면 연 3%의 손실이 예상
 - 수익과 비용 구조를 가정할 때 대부이자율이 42%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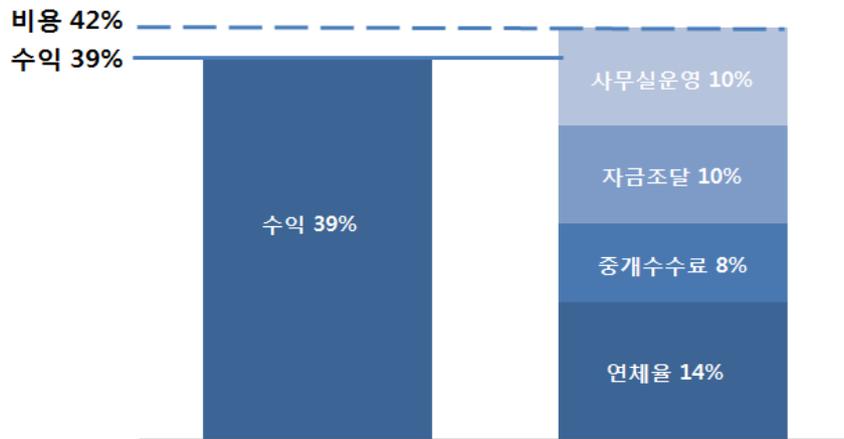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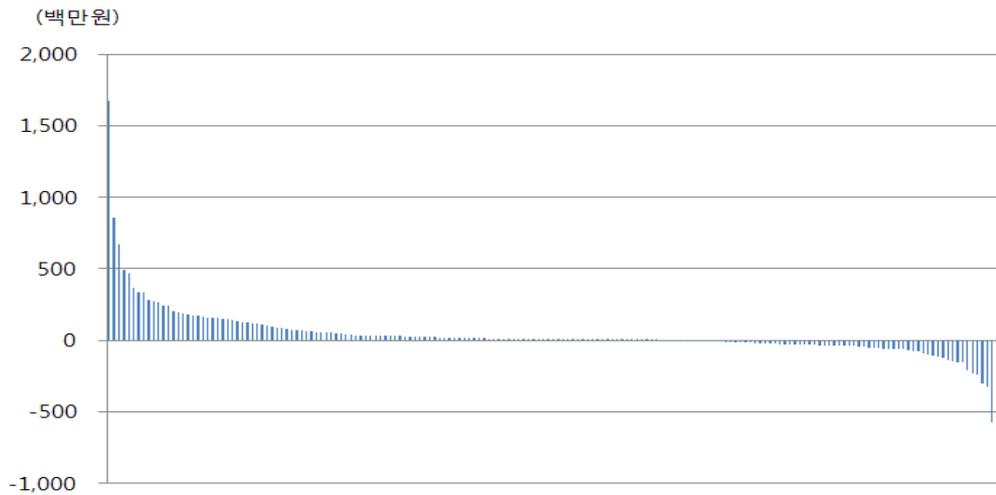
그림 4. 중소기업 법인 대부업체의 수익 및 비용 구조

- 높은 연체율
 - 중소기업 법인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개인신용대출 26.9%, 담보대출 33.2%, 기

업신용대출 31.3%로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 14%를 크게 상회

○ 영업수지상황의 악화

-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 211개 가운데 71개 업체가 적자, 112개 업체가 흑자로 전체의 33.6%가 적자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5.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부실한 개인 대부업체

무실적 개인 대부업체가 많고 매우 영세한 규모로 영업

○ 무실적 개인 대부업체가 다수

- 전체 개인 대부업체 2,792개 중 대부실적이 있는 업체는 1,646개에 불과하고, 41%가 무실적으로 형식적인 대부업 등록
- 개인 대부업체의 평균 대부금액은 1억 2600만원으로 매우 소액이며 업체당 평균 거래자 수도 26명에 불과

○ 부적절한 영업관리

- 거래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금융전산시스템이 미구축
- 대부서류 작성 및 보관, 원리금 수취, 연체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결여되어 법규 위반의 소지
- 사업자가 고령이거나 대부교육을 형식적으로 이수한 경우가 많아 대부업 법규에 대해 미숙지
- 표준양식의 대부서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

○ 법규 위반이 빈번

- 2012년 4차 대부업체 점검 시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79개 업체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가 47개로 과반을 차지
- 세무조사나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는 개인 대부업체들이 다수

○ 대부실적이 있는 업체 1,646개 중 과반이 주거용 건물에 영업장소 등록

- 영업장소가 주거용 건물인 업체가 822개, 업무용 건물인 업체가 693개, 사업장 미기재 및 기타가 131개
- 주거용 건물 영업 업체의 경우 평균대부금액이 1억 200만원, 거래자가 평균 14명으로, 업무용 건물 영업 업체의 평균 대부금액 1억 5600만원, 거래자 39명보다 영세

II. 현행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문제점

다양한 대부업 유형과 획일적인 관리감독

대부업은 여신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하고 금전대부를 하는 모든 업종을 포함

- 여신금융전문회사 관련 법규에서 제외된 금전대부 업종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이거나 여신금융전문회사 인가조건에 미달하지만 관련 금융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법 규정
- 이에 따라 일반 대부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등 본업 외의 부대업으로 취급하는 대부업, 기업금융, 할부금융, 전당포, 일수, 어음할인, 추심업, 중개업 등 다양한 영업이 업종의 본성과 관계없이 대부업 등록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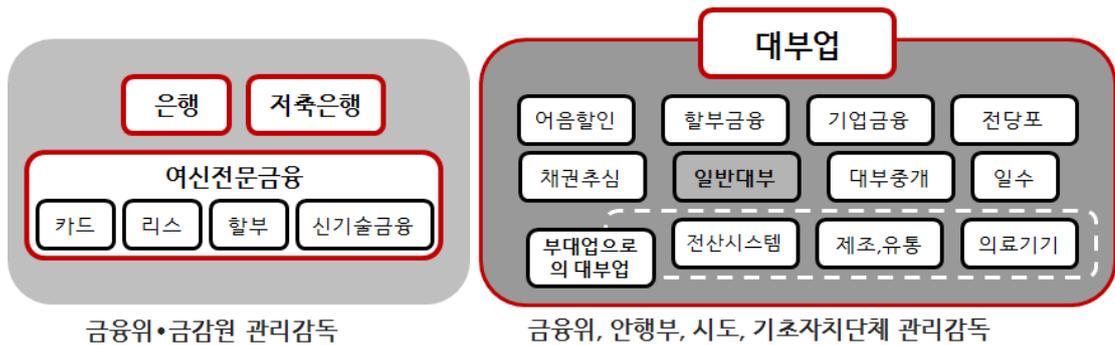


그림 6. 대부업의 범위

다양한 대부업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감독

- 일반대부업, 부대업으로서 대부업, 기업금융, 할부금융, 전당포 등 다양한 영업종류가 있으나, 관리감독은 고금리 사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대부업법에 근거
- 기업금융, 할부금융 등 저금리 금융업무를 하는 업체들도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법에 따라 관리감독
- 전당포는 거래고객 수가 적고 담보 소액대출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표와 장부를 이용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법규 위반이 빈번

관리감독의 이중구조 및 관리감독시스템의 미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감독 권한을 시·도에 위임, 서울시는 다시 자치구에 위임

- 금융위원회는 많은 대부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한다는 이유로 대부업 등록, 관리감독, 위법업체 행정처분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였고, 서울시 역시 이를 다시 자치구에 위임
-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를 직권으로 감독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은 기초단체에 맡기는 기형적인 감독체제
- 서울시 전문직 검사공무원이 자치구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점검에 나가 법규 위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사하지만, 행정처분은 자치구가 하므로 동일 법규 위반에 대해 자치구마다 행정처분 수위가 다를 가능성

감독인원의 부족 및 자치구 담당직원의 비전문성

-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169개 업체를 관리
- 2012년 10월 기준 총 4,722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자치구 대부업 담당공무원 수는 총 28명에 불과
- 검사대상 대부업체는 많고 전문 검사 공무원의 수는 적기 때문에 현장점검 시 이자율 위반, 자필서명, 대부명칭 사용, 대부조건 게시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점검
-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대부, 이자율 편법위반,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추심 등을 충분히 검사하는 데 한계
-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순환근무 및 병행업무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
-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6개월~1년 단위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유통업, 소비자보호, 지역기업 지원 업무 등을 병행

-
- 개인 대부업체의 사업자가 저학력이거나 고령이어서 법령 및 대부업무에 대한 몰이해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보다 지도권고가 대부분

서울시와 영세 대부업체 모두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관리감독이 어려움

- 개인 또는 일부 중소 대부업체는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내부관리가 취약
- 대부업체는 서울시에 엑셀자료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항목 미기재, 부정확한 기재 등이 빈번
- 서울시는 개별업체 정보를 엑셀파일로 보관하고 있어 대부업을 분석하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행정기관의 대부업체 정보통합 미비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자치구의 새울행정시스템에 타 지자체의 행정정보 열람 메뉴가 있으나, 실제 열람은 불가능
- 이에 따라 자치구들이 대부업 동일명칭 여부, 영업정지 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송부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

대부업체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부실업체가 진입

대부업은 등록제이고 등록요건이 부실

- 대부업은 등록업으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신청서, 각종 증명서, 수수료(10만원) 등을 제출하고, 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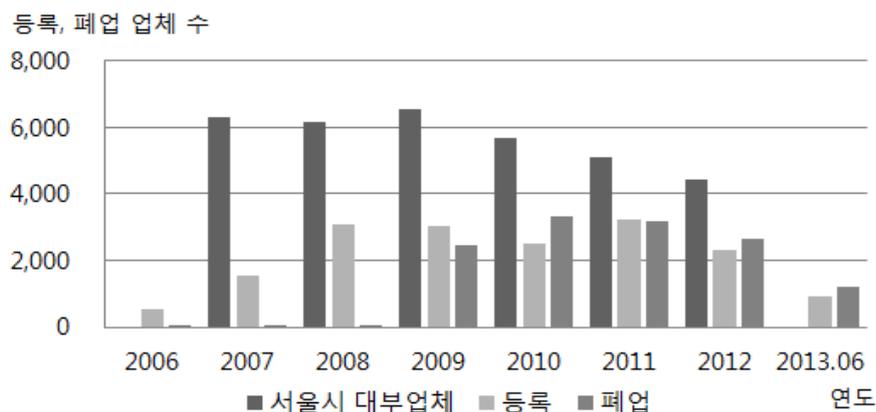
- 교육시간이 8시간으로 짧고 자격시험이 없는 관계로 사업자들이 대부업법에 대해 미숙지 가능성

자본금 및 보증금이 불필요, 영업장도 무규제

-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고,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규정도 없음
- 영업장소 설치에 대한 장소제한이 없어 주거용 건물, 다른 업종이 영위 중인 사업장도 영업장소로 가능
- 주거용 건물 사업장은 가정집이기 때문에 대부조건, 등록증 제시 등의 법규 준수가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의 부실을 초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등록과 폐업의 악순환

- 2012년까지 연간 2,500~3,000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등록하고 비슷한 수의 업체가 폐업
-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 혹은 개인 대부업체는 영업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상 영업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
- 2013년 상반기에도 1,200여 개 업체가 폐업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7. 서울시 대부업체 등록 및 폐업의 연도별 현황

III. 서울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개선방안

서울시 대부업체의 재정비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대부업의 설립요건 강화로 영세업체 재정비

- 영세업체의 재정비를 위해 최저자본금, 등록비용 인상, 영업장소 제한, 자격증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서민금융으로서 대부업의 건전성 확보

- 고금리 거품과 과도한 영업이익을 제거하여 최고금리를 적절하게 인하하고, 다양한 대부업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대부업 관리감독의 운영체계 개선

-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감독 업무 협력을 강화
- 서울시·대부금융협회의 공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부업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

주요 추진 전략

정책 방향	추진 전략
설립요건의 강화로 영세업체 재정비	- 최저자본금 도입 - 등록비용 인상과 보증금 제도 도입 및 영업장소 제한 - 직원교육 및 자격시험 시행
서민금융으로서 대부업의 건전성 확보	- 대형 대부업체의 고금리 거품 및 과도한 영업이익 제거 - 대부업 유형에 맞는 적절한 관리감독 -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기준 강화
대부업 관리감독의 운영체계 개선	-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 검사인력 보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대부업의 설립요건 강화로 영세업체 재정비

적정한 최저자본금 도입으로 전체 대부금액을 유지하면서 영세업체 재정비

-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전체 3,622개 중 494개 업체만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3,128개(86.4%) 업체는 퇴출 대상
- 이들 퇴출업체의 대부금액 총액은 8,847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약 9%에 불과
- 최저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253개 업체만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3,369개(93%) 업체는 퇴출 대상
- 이들 퇴출업체의 대부금액 총액은 1조 1,550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약 12%



그림 8. 대부업체의 최저자본금 설정

대부업 등록비용의 현실화 및 보증금 제도

- 11년 전에 설정된 대부업 등록비용 1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등록만 하고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는 대부업체를 사전 방지
- 일본의 경우 3년간 등록비용 15만엔(한화 약 170만원)을 부과하고, 홍콩은 매년 면허신청 수수료로 약 11,000홍콩달러, 면허발급 수수료로 1,910홍콩달러를 부과(한

화 합계 약 150만원)

- 보증금 제도를 두어 영업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편의상 대부업 등록은 하는 것을 방지
 - 싱가포르의 보증금으로 2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800만원)를 부과
 - 대부업체가 체납 시 해당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위법 방지에 효과

영업장소 제한

- 주거용 건물을 영업장소로 등록한 대부업자는 법규 위반을 자주 하고, 공개된 공공 장소가 아닌 곳은 현장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을 영업장소에서 제외

자격증 제도 및 직원교육

- 교육 시간과 내용을 강화하고, 자격증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사람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
 - 일본의 경우 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수의 합격자를 반드시 영업소에 배치
 - 싱가포르는 법무부 산하 IPTO(파산·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이 있으며, 합격률이 50% 미만일 정도로 엄격
- 현재 대표자만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담직원 역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서민금융으로서 대부업의 건전성 확보

고금리의 거품과 과도한 영업이익을 제거

- 중개수수료 8%(2013년 6월부터 5%로 인하), 연체율 14% 등 불필요한 비용이 대부

금리에 반영되어 금리거품이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 최고금리 39%인 환경에서 수많은 영세업체들이 한계적으로 생존하는 반면, 대부금액 기준으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기형적 공존체계
- 상위 대형 대부업체들이 조달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고금리를 받기 때문에 금리담합 가능성
- 최고금리를 적절하게 인하하여 한계 영세업체는 퇴출시키고 대형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익은 낮춰 대부시장의 금리를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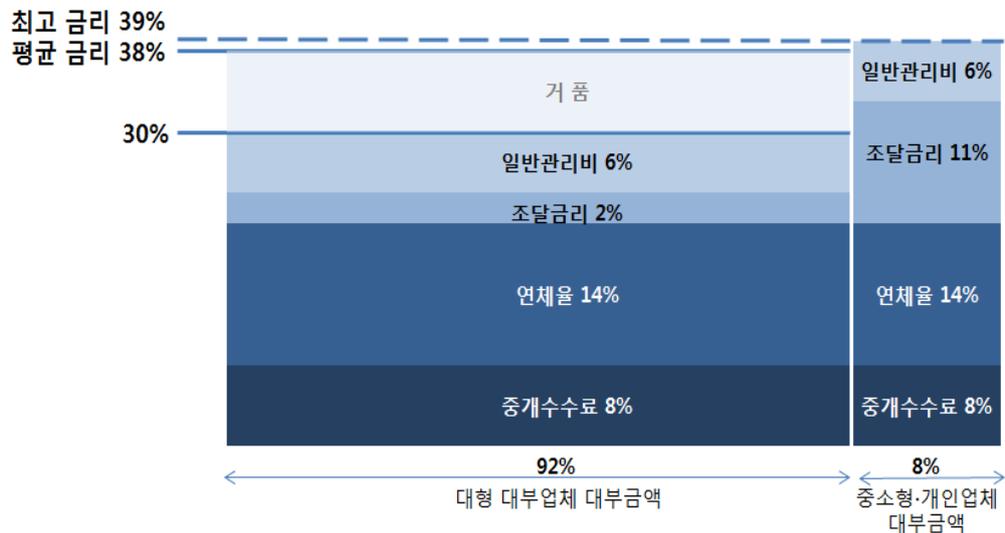


그림 9. 대형 대부업체의 고금리 거품 제거

대부업 유형별로 적절한 관리감독 시행

- 대부업 법규를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여러 유형의 대부업체들을 거래고객 유형, 금융거래 특성에 따라 대부업체 혹은 여신전문기관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적절한 법률 개정을 거쳐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

유형	개선방안
대형 대부업체	- 대부업법에 대형 대부업체의 별도 규정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서 등록, 관리감독, 행정처분 시행 - 여신전문금융법에 소액신용대출 업무를 신설하고 최소자본금 규정을 완화하여 대형 대부업체가 편입되도록 유도
도소매업, 제조업의 금전거래 및 할부판매	- 대부업에서 제외 - 무등록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의 이자율 상한 30% 적용
어음할인	- 어음할인 건별 대부계약서보다는 어음거래 약정서를 한번만 작성하도록 허용
전당포	- 간이계약서 사용과 약식 검사가 허용되도록 시행령에 반영
일수업	- 일수업은 최고금리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출 - 개인 일수업자 대신 사회적기업 등 대안금융의 일수 도입이 필요
중개회사	- 단계적 폐지

대부업의 영업행위 기준 강화

- 법규 위반 방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수교육, 지정은행계좌제, 영업세, 재등록 조건 강화, 영업지역 제한, 불시점검, 업무개선명령 등이 필요

영업행위 기준 강화	방안
보수교육	- 여신 관련법, 추심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보수교육 의무화
지정은행계좌제	- 고객과의 현금 입출금에 관한 지정계좌제를 의무화하여 이자율 준수 여부 확인
영업세 도입	- 무실적 대부업체 및 영세 대부업체 퇴출 유도 - 관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폐업 이후 재등록 조건 강화	- 폐업 후 재등록 가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편법 혹은 불법 영업을 미연에 방지
타 지역 고객에 대한 영업제한	- 고객과의 분쟁 발생 혹은 탈법적인 영업 발생 시 대부업체 주소지 및 고객 주소지의 행정관서와 경찰서가 관련되어 행정처리가 복잡 - 영업장소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영업하도록 규제

영업행위 기준 강화	방안
불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전 통지하고 대표자 허락 하에 실시하는 현장점검으로 위반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할 여유가 있어 실효성이 약화 - 불시점검으로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립
업무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법규 위반일지라도 지도권고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 처분 - 지도권고 혹은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대부업 관리감독의 운영체제 개선

대부업 관리감독의 행정체제

-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위법 시 직접 행정처분
- 서울시에 불법 사금융 감독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감독 업무 협력 강화
 - 자치구들이 동일사안의 법규 위반에 대해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및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 강화
- 대부업 등록 시 사전교육 강화
 - 자치구가 대부업 등록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에게 법규 사항을 설명하고 준법영업과 표준대부계약서 사용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한 후 등록증 발급

서울시 대부업의 관리감독 운영체제를 개선

- 검사인력 보강이 필요
 - 과잉대부, 불법추심 등에 관한 충분하고 철저한 검사와 운영시스템 미비에 대한 지

도 및 권고를 위해 검사인력 보강이 필요

○ 대부업 전산시스템을 구축

- 서울시와 대부금융협회는 공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업체의 영업실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업체 및 대표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폐업 및 재등록을 방지

○ 대부업의 경영 실태 및 실적 조사·분석

- 현재 서울시의 대부업 관리감독은 법규 위반 검사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부업 실적자료를 취합하여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는 것이 필요

○ 대부업체의 품질서비스 조사 및 시민 공개

- 서울시와 대부금융협회는 민원 발생, 법규 위반, 사회적 책임성, 내부 관리시스템, 직원교육 및 윤리 준수 등을 포함한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된 대부업 품질서비스 평가 제도를 만들어 개별 대부업체의 등급을 산정한 후 이를 시민에게 공개